

「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」 기관추천(일반)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

I 공급개요 및 일정

■ 위 치 :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

■ 공급규모

- 아파트 지하 7층, 지상 36층 14개동 총 1,963세대
- 차수 별 분양시기 : 1회차 356세대, 2026년 09월 23일 분양 / 2회차 1,607세대 2027년 2월 분양예정
※ 2회차의 분양시기는 사업주체의 사정 및 인·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- 특별공급 총 185세대
- ※ **기관추천 특별공급 33세대**,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6세대, 신혼부부 특별공급 49세대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1세대, 생애최초 특별공급 23세대 신생아 특별공급 33세대 예정

■ 입주예정시기 : 2030년 06월 예정 (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)

■ 1회차 공급대상

구분	주택형 (주거전용 면적기준)	약식 표기	세대별 계약면적(m ²)					공급 세대
			세대별 공급면적			기타 공용	계약 면적	
			주거전용	주거공용	공급면적			
민영 주택	84.9832	84A	84.9832	27.618	112.6012	10.0815	122.6827	23
	84.9469	84B	84.9469	28.5399	113.4868	10.0772	123.564	10
	공급세대 합계							33

■ 기관별 배정세대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, 85m²이하 민영주택10% 범위 내 공급(예비 500%)

구분	국가유공자 등				장애인		중소기업근로자		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		합계	
	국가유공자 외		장기복무 제대군인									
	확정	예비	확정	예비	확정	예비	확정	예비	확정	예비	확정	예비
84A	3	(15)	5	(25)	7	(35)	3	(15)	5	(25)	23	(115)
84B	2	(10)	2	(10)	3	(15)	1	(5)	2	(10)	10	(50)
합계	5	(25)	7	(35)	10	(50)	4	(20)	7	(35)	33	(165)

- ※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,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.
- ※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, 주거공용면적은 계단, 복도, 공동현관, 벽체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,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, 전기/기계실, 주차장, 관리사무소,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.
- ※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※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(m²)로 표기하였으며, 제곱미터(m²)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: 공급면적(m²) x 0.3025 또는 공급면적(m²) ÷ 3.3058
- ※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.
- ※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에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,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%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한다. 다만,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600%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일정 계획

구 분	일 정	비 고
입주자모집공고(예정)일	2026. 09. 23(수) (예정)	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
분양홍보관 OPEN(예정)일	2026. 10. 02(금) (예정)	
특별공급 접수일	2026. 10. 06(화) (예정)	한국부동산원 '청약홈' 홈페이지에서 신청 ※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
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일	2026. 10. 15(목) (예정)	한국부동산원 '청약홈' 홈페이지에서 확인

- 18.05.04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'분양홍보관 방문 신청'에서 '인터넷(청약홈 홈페이지 www.applyhome.co.kr) 청약 신청'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, 고령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분양홍보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.(10:00~14:00)

단, 분양홍보관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(필요서류 분양홍보관 별도 문의)

- ※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I

특별공급자격 및 유의사항

■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

구분	내용
공급기준	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.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제1호,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) ※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. 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,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 ■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·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(1회 특별공급 간주),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.
무주택요건	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- 기관추천 :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■ 2018.12.11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호의3, 제2조제4호에 의거 '세대' 및 '무주택세대구성원'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. - "세대"란, 다음 각 목의 사람(이하 "세대원")으로 구성된 집단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 가. 주택공급신청자 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(예) 부모, 장인·장모, 시부·시모, 조부·조모, 외조부·외조모 등 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, 이하 같음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(예) 아들·딸, 사위·며느리, 손자·손녀, 외손자·외손녀 등 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: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(예) 전혼자녀 등

	-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이란,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,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■ 2018.12.11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7호의2, 제23조제4항,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(이하 “분양권등”)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,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(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참조) ※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(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, 제565호, 2018.12.11. 시행) -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 시행일(2018.12.11.) 이후 ‘입주자모집공고, 관리처분계획(정비사업) 또는 사업계획(지역주택조합)’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, ‘공급계약 체결일’ 기준 주택 소유로 봄 (*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,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) - 분양권등 매수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 시행일(2018.12.11.)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, ‘(실거래 신고서상) 매매대금 완납일’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■ 2018.12.11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(분양권등 포함)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.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.																				
구분	내용																				
청약 자격 요건	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- 기관추천(장애인,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(도시재생 부지제공자)는 청약통장 불필요) ①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(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형에 한함)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																				
	[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]						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부산광역시</th><th>그 밖의 광역시</th><th>거제시</th></tr><tr><td>전용면적 85㎡ 이하</td><td>300만원</td><td>250만원</td><td>200만원</td></tr><tr><td>전용면적 102㎡ 이하</td><td>600만원</td><td>400만원</td><td>300만원</td></tr><tr><td>전용면적 135㎡ 이하</td><td>1,000만원</td><td>700만원</td><td>400만원</td></tr><tr><td>모든면적</td><td>1,500만원</td><td>1,000만원</td><td>500만원</td></tr></table>	구 분	부산광역시	그 밖의 광역시	거제시	전용면적 85㎡ 이하	300만원	250만원	200만원	전용면적 102㎡ 이하	600만원	400만원	300만원	전용면적 135㎡ 이하	1,000만원	700만원	400만원	모든면적	1,500만원	1,000만원	500만원
	구 분	부산광역시	그 밖의 광역시	거제시																	
	전용면적 85㎡ 이하	300만원	250만원	200만원																	
전용면적 102㎡ 이하	600만원	400만원	300만원																		
전용면적 135㎡ 이하	1,000만원	700만원	400만원																		
모든면적	1,500만원	1,000만원	500만원																		
신청 자격	※ ‘지역’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※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※ 추천기관						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관련법규</th><th>해당기관</th></tr><tr><td>국가유공자 등</td><td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,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</td><td rowspan="2">국가보훈부 경남지방보훈청 복지과</td></tr><tr><td>장기복무군인</td><td>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</td></tr><tr><td>10년 이상</td><td>「군인복지기본법」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</td><td>국군복지단</td></tr></table>	구분	관련법규	해당기관	국가유공자 등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,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	국가보훈부 경남지방보훈청 복지과	장기복무군인	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	10년 이상	「군인복지기본법」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	국군복지단									
	구분	관련법규	해당기관																		
	국가유공자 등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,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	국가보훈부 경남지방보훈청 복지과																		
장기복무군인	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																				
10년 이상	「군인복지기본법」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	국군복지단																			

	장기복무군인		복지사업운영과
	장애인	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	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
	중소기업근로자	「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」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	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 청 지역정책과
■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한 분(단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(도시재생 부지제공자)는 청약통장 불필요)			
당첨자 선정 방법	■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. 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 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 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 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. (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) 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 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,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		

III

분양홍보관 위치 및 분양문의

- 분양홍보관 위치 :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302-3
- 사업지 위치 :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
- 홈페이지 : <https://힐스테이트거제시그니처.com>
- 분양문의 : 1811-1100

1. 투시도

※상기 CG이미지는 인·허가 진행중으로, 일부 설계변경이 있을 예정이며, 추후 이미지가 변경됩니다.

2. 사업지 및 분양홍보관 위치도

